

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을 10년 이내 8% ⇒ 10년 이내 5%로 완화하였습니다.

- 주택재개발구역 내 점유토지를 당초계약자로부터 매입한 자에게도 분할납부규정을 승계하여 매매계약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최저요율을 적용토록 완화(1000분의 25 ⇒ 100분의 10) 하였습니다.
- 또한 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최저요율인 1000분의 10을 적용토록 신설하고,
- 공유재산을 대부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산출한 대부료의 20% 범위 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부동산 관리신탁, 부동산 처분신탁, 토지 신탁 등 신탁의 종류를 신설하였습니다.

□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에서 “조례표준안”을 각 시·도에 시달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도 그 동안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은 동 조례 개정안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특히, 제114회 임시회의시 김길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개정되었던 재개발지역의 시유지에 대한 분납조건, 이자율 등에 대하여 그동안 야기되었던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이를 해소하게 되었고, 재개발지역 주민들로부터 감사와 환영을 받았습니다.
- 그러나 영세한 재개발 주민들의 민원은 또 다시 시작되었습니다. 그것은 승계자에게 분납조건과 이자율 등이 적용되지 않아 매매를 할 수 없어 주민들의 어려움은 물론 재개발사업조차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 조합이 많이 발생하게 된 현실을 감안하여 원매인들로부터 승계한 승계자에게도 1회에 한하여 20년 분할조건에 연리 5%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코자 하

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타당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.

- 다만, 지방재정법시행령 83조의2(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)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동 조례에는 재산 조성에 관한 규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 그 동안 우리 서울시가 과연 시유재산 조성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, 또한 조성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아쉬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.

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3항중 “계약절차 등에”를 “계약절차, 계약기간 등에”로 한다.

안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수입증지 판매공무원 또는 판매인으로서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를 판매인에게 교환 또는 환매(오손 또는 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)를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변상책임) 수입증지를 출납·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손·망실의 경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안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(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계속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0년 3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이하 "수입증지"라 한다)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) ①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발행하고 관리한다.

②시장은 수입증지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수입증지취급공무원을 둔다.

③수입증지의 종류·규격 및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수입증지에 의한 납부)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 등은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할 수 있다.

1. 묘지·화장장·납골당 사용료
2. 공원 위탁·점용허가 신청 수수료
3. 위생시험수수료
4. 서울특별시수수료조례에 의한 수수료
5.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, 수수료 등

제4조(수입증지의 판매 등) ①수입증지는 시장과 계약한 수입증지판매인(이하 "판매인"이라 한다)이 판매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이 판매토록 할 수 있다.

②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입증지판매 신청을 하여야 한다

③판매인의 요건, 의무, 계약절차,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수입증지판매수수료) ①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판매수수료는 시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을 수입증지로 교부한다. 다만, 10원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.

②제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6조(감독 등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매인의 판매관련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

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수입증지영수증 발행) 수입증지 판매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발행한다.

제8조(수입증지의 소인)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수입증지를 관련서류에 첨부하고, 첨부한 지면과 수입증지 문체에 걸쳐 소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입증지의 교환) ①판매인은 수입증지가 오염·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수입증지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판매인은 수입증지의 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.

②수입증지 판매공무원 또는 판매인으로부터 수입증지를 구입한 자로서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를 판매인에게 교환 또는 환매(오손 또는 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.)를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변상책임) 수입증지를 출납·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손당실의 경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계속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0년 3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중 "시장은 당해 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30퍼센트를 당해 구에 귀속시킬 수 있다."를 "시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·매각대금·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30퍼센트를 당해